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322
----------	------

발의연월일 : 2025. 2. 21.

발의자 : 문진석 · 이건태 · 김교홍
이정문 · 홍기원 · 한정애
복기왕 · 이연희 · 윤준병
이재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6조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의무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점검 실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은 유지관리보다 강화된 점검 제도로서 건축물 등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은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건축물등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동일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성능점검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성능점검 후 점검기록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규정만 있고, 성능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성능점검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한편,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가 안전하고 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성능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개선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미이행 시의 벌칙규정을 신설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다양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7조, 제20조의2 신설, 제28조, 제30조).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유지관리기준의 고시”를 “유지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점검을”을 “제17조에 따른 성능점검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하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을 “성능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관리주체는”을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대상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1항에”로, “특별자치시장”을 “그 점검기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으로, “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점검기록을 확인한 결과 기계설비가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 자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취약계층 이용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안전하고 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 용도 및 특성에 맞는 기계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건축물등에 설치된 노후되거나 성능개선이 필요한 기계설비

의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기계설비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0조제1항제1호 중 “제17조제1항”을 “제1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3의2.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 이행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점검 점검기록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30

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능점검을 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기계설비 <u>유지관리기준의 고시</u>)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u>점검을</u>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② (생략)</p> <p>제17조(기계설비 <u>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u>)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p>	<p>제16조(기계설비 <u>유지관리</u>) ① -- ----- ----- <u>제17조에 따른 성능점검을</u>----- ----- ----- -----.</p> <p>②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하 “유지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17조(기계설비 <u>성능점검</u>) <삭제></p> <p>① <u>제16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u></p>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
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
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
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리대상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② 제1항에
그 점검기록을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점검기
록을 확인한 결과 기계설비가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된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

주체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취약계층 이용 건축물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가 제16조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안전하고 적합하게

<신 설>

<신 설>

<신 설>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 용도 및 특성에 맞는 기계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건축물등에 설치된 노
후되거나 성능개선이 필요한
기계설비의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p>② ~ ⑦ (생 략)</p> <p>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생 략)</p> <p><u><신 설></u></p> <p>2. ~ 4. (생 략)</p> <p>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u>제17조제1항</u>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p> <p>2. <u>제17조제2항</u>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p> <p>3. <u>제17조제3항</u>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p> <p><u><신 설></u></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p>제28조(벌칙) ----- ----- -----.</p> <p>1. (현행과 같음)</p> <p><u>1의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기계설비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30조(과태료) ① ----- ----- -----.</p> <p>1. <u>제16조제2항</u>----- -----</p> <p>2. <u>제17조제1항</u>----- ----- -----</p> <p>3. <u>제17조제2항</u>----- -----</p> <p><u>3의2.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 이행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u></p>
---	--

	<u>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자</u>
4.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현행과 같음) ②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제17조제3항</u> 을 위반하여 점 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u>제17조제2항</u> ----- ----- -----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